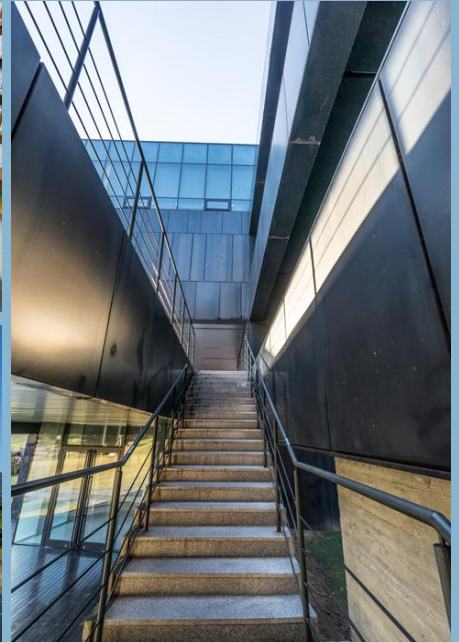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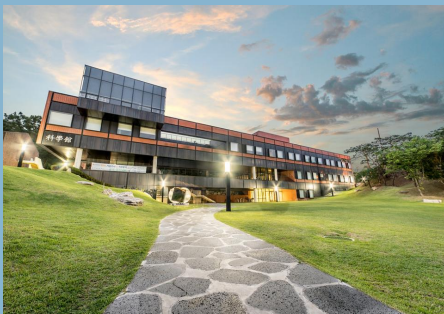


2018학년도 차 의과학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차 의과학대학교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 단위	모집인원	
		인원제한(정원내2%) 지원자격 ①~⑤ 해당자	인원비제한 지원자격 ⑥~⑧ 해당자
자연과학	간호학과	7명	00명
	의생명과학과		
	바이오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스포츠의학과		
인문사회	보건복지행정학과		
	보건의료산업학과		
	데이터경영학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 획득(2015년 6월 11일 ~ 2020년 6월 10일)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7.7.1.(토) ~ 7.7.(금) (마감일은 17:00까지)	인터넷 접수만 실시 (http://www.jinhakapply.com)
서류제출	2017.7.3.(월) ~ 7.10.(월)	우편/방문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보내실 곳: (우) 11160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차 의과학대학교 입학처
면접고사	2017.7.25.(화)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17.8.18.(금)	
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2017.12.25.(월) ~ 12.28.(목)	
추가합격자 발표	2017.12.29.(금) ~ 2018.1.3.(수) 21:00까지	
추가합격자 등록	2018.1.4.(목)까지	
등록금 납부	2018.2.7.(수) ~ 2.9.(금)	

※ 면접일정, 합격자 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연락은 하지 않음

※ 7.8(토)~9(일)은 서류 방문제출 불가

■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1) 지원자격

분류 번호	지원자격	자격요건	외국학교 최소 재학기간	공통학력요건
①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서 국내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②	해외근무자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해외 근무자의 자녀		
③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④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 *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⑤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 (복수국적자 제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	
⑥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전 교육과정을 이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⑦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복수국적자 제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국내 또는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⑧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전 교육과정을 이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 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 간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2) 지원자격별 부모 최저 해외근무, 거주(영주), 실체류기간 기준

지원자격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2년	2년	2년	-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자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의 자녀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
기타 재외국민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2년	2년	2년	-	-	-	-	-

-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직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3) 공통 학력 요건

- 가. 모든 지원자는 국내외에서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나. 외국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수학한 경우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4) 외국학교 인정 기준

- 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학교
- 나.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 과정의 학교
- 다. 대한민국 내의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단, 지원 대상 ⑦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라.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 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 마.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단,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재학기간 인정 기준

- 가. 모든 지원자는 국내외에서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나.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 해석
- 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라.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 마. 외국 근무가 종료된 후 자녀만 외국에 남아 계속 수학하는 기간은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바.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 함
-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단, 해당국 및 외국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 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사.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11학년제, 12학년제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아.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해당학교 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
- 자. 재학기간은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하며 유급한 기간은 제외함
- 차. 조기졸업, 월반, 중복학기, 외국의 학제 차이 등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6) 지원 자격의 완화

- 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입학 허용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7) 자격기간 계산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영주기간	- 영주권을 최초 발급 받은 날부터 자격인정 기준 시점까지 해당국에 영주하는 기간(단,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영주권에 갈음하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근무기간	- 인사발령(외국 근무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상의 해외근무 시작 월부터 해외근무 종료 월까지의 기간
재학기간	- 영주 및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월단위 계산)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대한민국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8) 자격인정 기준 시점

- 가. 대한민국의 학년도가 끝나는 2018년 2월 28일을 자격인정 기준 시점으로 함(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대한민국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

■ 제출 서류

1) 분류번호: ① ~ ⑧

지원 자격	제출 서류
① 영주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 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소정양식)(서식) • 학력조회 동의서(본교소정양식)(서식)
②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 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③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상사직원의 자녀에 한함) •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 자영업자에 한함) •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에 한함) •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에 한함) •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또는 제적 등본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소정양식)(서식) • 학력조회 동의서(본교소정양식)(서식)
④ 기타 재외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또는 제적 등본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소정양식)(서식) • 학력조회 동의서(본교소정양식)(서식)
⑤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 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적상실확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제적 등본) • 외국국적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재정보증서류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소정양식)(서식) • 학력조회 동의서(본교소정양식)(서식)

※ * 표시된 제출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7쪽 참조)

※ (서식)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ha.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부모 사망 또는 이혼시 증명서류(사망/이혼시기 및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지원 자격	제출 서류
⑥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소정양식)(서식) • 학력조회 동의서(본교소정양식)(서식)
⑦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전 가족 호적등본 • 외국국적 증명서(부, 모, 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 재정보증서류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소정양식)(서식) • 학력조회 동의서(본교소정양식)(서식)
⑧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전 가족 호적등본 •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재정보증서류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본교소정양식)(서식) • 학력조회 동의서(본교소정양식)(서식)

※ * 표시된 제출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7쪽 참조)

※ (서식)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ha.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부모 사망 또는 이혼시 증명서류(사망/이혼시기 및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중국인의 경우 호구부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모든 호구부 및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 서류제출 유의사항

가. 한국어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서류 제출 시에는 해당국 공증기관이 공증한 한글 또는 영문 번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나. 외국에서 재학·졸업한 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다. 국외기관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해당국 공증기관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라.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 (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본교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해야 함

마. 일정 기간 재학하였으나 졸업 또는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학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재학사실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음)

바.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사. 최종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아. 부모가 거주한 나라가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거주국의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해야 함

자.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는 소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함

3)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지원자는 아래의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 외국에서 재학·졸업한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공문서
- 사립학교가 발급한 각종 증명서와 공문서는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

- 학교 소재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해당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사무소, 위치,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음)

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라.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www.hcch.net 참조 (관련 문의 ☎ : 02-2100-7600, 외교부)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모집단위	전형요소 활용			선발모형
	서류평가	구술면접	총점	
간호학과	30	70	100	일괄합산
의생명과학과				
바이오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보건복지행정학과				
보건의료산업학과				
스포츠의학과				
데이터경영학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 서류평가, 구술면접 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

※ 지원자의 수학능력이 본교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고사

면접 활용 자료	평가기준	면접방법
· 입학원서 · 자기소개서	· 전공에 대한 적성 · 가치관 · 논리적 사고와 이해 · 표현력 · 태도와 예절	· 구술면접

■ 전형료 : 100,000원 (수수료 학교 부담)

■ 동점자 처리방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사정 원칙에 따라 모집인원 내로 선발

1. 구술면접점수 우수자
2. 서류평가점수 우수자

■ 수험생 유의사항

1. 원서접수 유의사항

- 가. 지원학과는 한 개의 학과를 선택해야 함(복수지원 불가)
- 나. 기재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기재 바람
- 다. 전형 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국내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연락 두절 및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라. 원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전형료 결제(입금)를 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 마. 결제 도중 창이 닫히거나 시스템 종료 등으로 인하여 결제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바. 전형료 결제(입금)후에 접수번호가 부여되어야 입학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임
- 사.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후 이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전형료도 반환되지 않음

2. 수험생 유의사항

- 가. 수험생은 구술면접 시 수험표와 함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 전화 등 통신기기를 지참할 수 없음
 - 나. 합격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 다. 신입생은 본교가 정한 특별한 경우(군 입대)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음
 - 라.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함
 - 마. 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본교의 입학에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포기 절차(입학처 문의)를 밟아야 함
 - 바.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음
 - 사.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본교 및 타 대학교의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 됨

3. 합격 취소

- ※ 다음의 경우에는 입학 허가가 취소되며, 입학한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학이 취소됨
- 가. 제출한 서류 중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 나. 합격 후라도 지원 자격 미달로 밝혀진 경우
 - 다. 입학시험 부정행위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 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당해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 문의처: 차 의과학대학교 입학처 ☎ 031) 850-9021~6 / FAX. 031) 542-0116

※ 홈페이지: 차 의과학대학교 입학처 <http://admission.cha.ac.kr/>

※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공통 지원자격 안내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함
-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
 - 다만,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학생·부모의 신뢰보호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20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로 시행하되, 공통 지원자격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

구분	2020학년도까지
학생 이수 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체류 기간	대학 자율 설정

→

2021학년도 이후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